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13
----------	------

제출일자 : 2005.11.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여 나가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사전 자연재해를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의 운영시기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8조).
- 다.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 수렴 및 현지조사와 협의의견 반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 라. 검토위원회의 개최 시 필요한 회의록 및 간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 마. 방재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 사. 방재단의 주요임무, 활동사항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19조).
- 아.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단원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 입법예고 : 2005. 10.25 - 2005. 11.14(20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지역자율방재단 시범사업 추진 지침(표준안 포함)(경기도지사, 2005. 9.12)
-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 시달(경기도지사, 2005.10. 6)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 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검토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업무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검토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9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8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의 참여금지, 해촉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조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

제15조(구성) ①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단체·개인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⑧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16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안산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8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안산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회장 또는 단원 3분의1 이상의 전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전의할 수 있다.

제19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활동 및 지원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안산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단체단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23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24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25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재난관리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난관리담당 김용배
	담당자 성명·전화	오동원 (481-2162)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
촉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명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체명		대표자	○ ○ ○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인)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

[별지 제3호 서식]

활동확인서

성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홀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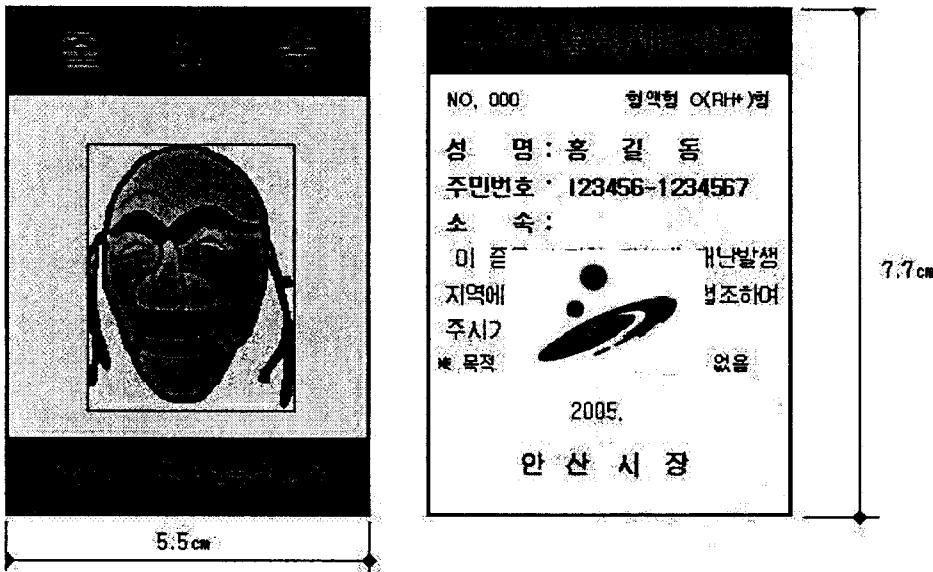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불입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입증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13
----------	------

제안년월일 : 2005. 12. 6.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 수정이유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민방위대 및 자율방범 대와 기능이 유사할 뿐 아니라 형식적인 단체 운영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좀더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전부 삭제하고 안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함.(안 제15조 내지 제27조)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함.(안 제4조)
-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안 제6조)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검토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검토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앞의 “제3장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을 삭제한다.

제15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를 제15조로 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u>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u></p> <p><u>제1장 총칙</u></p> <p><u>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장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u></p> <p><u>제4조 (위원장) ①~② (생략)</u></p> <p><u>③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6조 (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한다.</u></p> <p><u>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p> <p><u>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u></p> <p><u>설치 및 운영 조례안</u></p> <p><u><삭 제></u></p> <p><u>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삭 제></u></p> <p><u>제4조 (위원장) ①~② (원안과 같음)</u></p> <p><u>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u>제6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에는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②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③검토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본다.</u></p>

제3장 안산시지역 자율방재단

제15조 (구성) ①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단체·개인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안산시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⑧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16조 (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7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안산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8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안산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 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③협의회는 회장 또는 단원 3분의1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 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삭 제>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활동 및 지원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안산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

<삭 제>

<p><u>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u></p> <p><u>2.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u></p> <p><u>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u></p> <p><u>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u></p> <p><u>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u></p> <p><u>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u></p> <p><u>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u></p> <p><u>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단체단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u>제2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u> <u>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u> <u>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u> <u>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u> <p><u>제23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u></p> <p><u>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u></p>	<p><u><삭 제></u></p> <p><u><삭 제></u></p>
--	---

발급한다.

제24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
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
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
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25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
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
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
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
다.

제27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
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
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생략)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 (원안 28조와 같음)